## 2021년도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# I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21. 3. 19.(금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 : 김연희, 신창환(분과위원장), 심장섭, 위정현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## 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9건(안건번호 제2021-26411호~26480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#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금회 심의 대상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- B 위원: 순번 1번~70번 {'☆☆☆☆' 사이트의 '[중점](영화)톰과 제리 (2021) [긴급]' 등 89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,(방송)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는 것이 타당함.
- C 위원: 순번 1번~70번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,(방송)등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 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: 금번 심의안건인 순번 1번~70번 [영화 톰과 제리, 테넷, 새해 전야, 로그시티, 어니스트씨프, 아홉수로맨스, 구라 베토벤, 미션임파서블, 아웃사이드더와이어, 알로하, 오 하나를 찾아서, 라야와 마지막드래곤, 내가 죽던날, 이웃 사촌, 더더그, 위위드그랜파, 모리타니언, 소울, 마이오네트, 몬스터 헌터, 방송물 설국열차, 스위트홈 등 89건의 게시물]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인 영화와 방송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

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 함.

# 2021년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3. 19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위정현